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-182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(안 제6조)
- 나.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(안 제7조)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
  - 2)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2항(용도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15. ~ 11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20.11.10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
  - 가. 재난 예방·대응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사업
  - 나. 재난 예방·대응을 위한 교육·훈련 및 홍보
  - 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·자문에 따른 장비구입·수당 및 경비
  - 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  - 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  - 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
  - 사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  - 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
  - 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
## 2. 마포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

- 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, 내수재해위험지구, 토사재해위험지구, 사면재해위험지구, 바람재해위험지구,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
- 나. 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
- 다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
- 라.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
- 마.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

## 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8호”를 “제6조제1호사목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</u></li> <li><u>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</u></li> <li><u>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</u></li> <li><u>4. 재난관련 장비 구입</u></li> <li><u>5.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</u></li> <li><u>6.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·보수·보강</u></li> <li><u>7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·보강</u></li> <li><u>8. 수해·강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</u></li> <li><u>9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</u></li> <li><u>10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</u></li> <li><u>11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</u></li> <li><u>12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</u></li> </ol>	<p><u>제6조(기금의 용도)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가. 재난 예방·대응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사업</u></li> <li><u>나. 재난 예방·대응을 위한 교육·훈련 및 홍보</u></li> <li><u>다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·자문에 따른 장비구입·수당 및 경비</u></li> <li><u>라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</u></li> <li><u>마.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</u></li> <li><u>바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</u></li> <li><u>사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</u></li> </ol> </li> </ol>

## 설 설치

1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- 아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
- 자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
2. 마포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

가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, 내수재해위험지구, 토사재해위험지구, 사면재해위험지구, 바람재해위험지구,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

나. 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

다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봉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

라.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

	<p><u>마.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</u>  <u>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</u>  <u>인정되는 시설</u></p> <p><u>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</u>  <u>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</u>  <u>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<p>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<u>영 제74조제</u> <u>8호</u>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 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<u>제6조제1호</u> <u>사목</u>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 
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 의안의 시행에 따른 발생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.

## 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김동우 (☎ 3153-9464)